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1. 20 선고 2023가단9018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배은서

피 고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명현

변 론 종 결 2024. 10. 30.

판 결 선 고 2024. 11.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635,2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6.부터 2011. 1. 28.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외 C와 피고 A 사이에 2018. 11. 22. 체결된 20,000,000원의 금전 증여계약과 2018. 12. 12. 체결된 50,000,000원의 금전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A는 원고에게 65,635,2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

원고는 2005. 8. 26. 소외 C와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 그 배우자인 D과 연대보증약정을 하였다. C는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원리금 상환 연체로 인하여 2010. 4. 30.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0. 8. 26.경 중소기업은행에 C의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다음, C 및 D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3. 24. 65,635,23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1011)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상 채권의 시효를 연장시키기 위하여 C,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200,653원 및 그 중 65,635,236원에 대하여 2010. 8. 26.부터 2011. 1. 28.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인천지방법원 2021. 3. 22.자 2021차전108527호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영업 및 그 영업의 양도

C는 1990. 11. 15. 시흥시 E에서 'F(변경 전 상호 G)'라는 상호로 주형 및 금형 제조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하다가 2010. 3. 31. 폐업신고를 하였다. 그 후 소외 H이 2010. 9. 28.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I'라는 상호로 같은 종류의 영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6. 12. 31.경 폐업신고를 하였고, 피고 B은 2016. 11. 2.경부터 2020. 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G'이라는 상호로 같은 종류의 영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¹⁾, C의 딸인 피고 A가 2020. 9.경 피고 B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서(을 2호증)를 작성하고 2020. 10. 6.부터 같은 장소에서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H, 피고 B은 C가 운영하던 F의 직원이었고, 피고 B은 I의 직원으로도 있었던 사람이다. H(I)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2010. 9. 28.경부터 피고 A와의 거래내역, 학원비 결제내역이 다수 나타나고(이 법원의 J은행에 대한 2024. 9. 24.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C, D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2011. 10. 11.경 경락받은 K 명의의 계좌로 2011. 12.경부터 2015. 5.경까지 월 130만 원씩 송금된 내역이 존재한다(이 법원의 L조합 신목지점에 대한 2024. 10. 4.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피고 B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갑 17호증)에서도 2016. 11. 29.부터 2020. 10. 5.경까지 피고 A와의 거래내역, C 측 아파트 관리비 결제내역, K에 대한 송금내역 등이 다수 존재한다.

다. 피고 A의 아파트 매수자금

C의 배우자인 D은 2005. 8. 10.부터 시흥시 M 아파트 N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위 K가 2011. 10. 11.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피고 A는 2018. 11. 22. K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7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2018. 12. 12. 매매잔대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피고는 계약당일 K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잔금 중 2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 13, 14,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J은행에 대한 2024. 9. 24.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이 법원의 L조합 신목지점에 대한 2024. 10. 4.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상호속용인인 피고들에 대한 변제 청구

피고 B, 피고 A가 C의 이 사건 영업을 순차로 양수하여 유사한 상호를 속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C의 채무인 65,635,2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0.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C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2018. 11. 22. 딸인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계약금 2,000만 원을 증여하고, 잔금일인 2018. 12. 12. 5,000만 원을 증여함으로써 피고 A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하였다. 채무자인 C가 위 2,000만 원, 5,000만 원을 증여하기로 하는 각 증여계약은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이고, C는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고, 수익자인 피고 A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7,000만 원 중 원고의 채권액인 65,635,2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상호속용인인 피고들에 대한 변제 청구에 관하여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상법 제42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영업상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도 실제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서 채무인수가 제외된 경우에 채권자의 채권이 영업재산과 분리되게 되어 채권자를 해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므로 채권자에게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것과 같은 영업양도의 방법, 즉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속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방법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방법 등이 채용된 경우에 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상호속용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변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영업은 같은 사업장에서 H, 피고 B, 피고 A 순으로 사업자등록명의자가 변경되어 운영되어 왔는데, 동인들이 외형상 영업양도의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각 양도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피고 B은 H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및 급여 등으로 'I'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B은 'F', 'I'의 직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A가 제출한 양수계약서(을 2호증)에 의하면 피고 A가 대금 2억 원을 50개월에 걸쳐 40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하고 피고 B은 피고 A의 업무에 협조한다는 내용이어서, 피고 B이 이 사건 영업 장소에서 직원으로 계속 근무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게 한다.

② 원고는 당초 피고들이 이 사건 영업을 순차로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상호속용인으로서의 책임을 주장하였는데, 위 ① 사정을 들어 C가 원고에 대한 채무면탈을 위하여 피고들의 명의만을 빌려서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024. 4. 22.자 및 2024. 7. 8.자 원고의 준비서면). 상호속용인의 책임이란 실제 영업양도가 이루어졌음에도 채무인수는 제외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C가 피고들의 명의만을 빌린 것이라면, 피고들이 상호속용인으로서 변제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

③ 나아가 H은 'I'라는 상호로 약 6년간 사업을 하였으므로, H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형식을 취한 피고 B이 상호를 속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상법 제45조는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8827 판결), 피고 B의 경우 이 사건 영업의 양도일에 해당하는 2020. 10. 6.로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까지 2년이 도과하였다.

나.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하여

1) 본안 전 항변

피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8. 12. 12.경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8. 12. 12. 무렵 원고가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2018. 11. 22.로부터 5년 이내인 2023. 10. 4.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C가 피고 A와 2018. 11. 22. 2,000만 원, 같은 해 12. 12. 5,000만 원의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의 O조합에 대한 2024. 3. 11.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이 법원의 시흥세무서에 대한 2024 3. 13.자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 A는 1994년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무렵인 2018년 (주)P에 재직하여 1,400만 원의 급여소득만이 있었던 사실(2019년 약 3,200만 원, 2020년 약 3,700만 원의 급여소득), 피고 A 명의의 O조합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는 위 피고가 16세 무렵인 2010. 2. 23. 개설되었는데, 위 계좌에는 2010. 11. 18.경부터 2015. 5.경까지 H(I)과의 거래내역이 다수 존재하고, 2017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피고 B와의 거래내역도 존재하며, 피고 A가 K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이전부터 K와의 금전거래내역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가 피고 A의 계좌를 이용하여 다수의 거래를 해왔고, 피고 A가 C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위 각 증여계약일 무렵 C와 피고 A 사이의 직접적인 자금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위 피고는 피고

B, 지인인 Q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정기예금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였다는 내용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증여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최미복

1) 피고 B은 H으로부터 위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